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ACBC

국 민 권 의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2 - 217호

의 안 명 「지방세 고지·송달 과정에서의 국민불편 해소방안」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의 결 일 2022. 3. 14.

주 문

「지방세 고지·송달 과정에서의 국민불편 해소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행정 안전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2년 3월 14일

위원장 전현희

위원 안성욱

위원 이정희

위원 김기표

위원 강재영

위원 박계옥

위원 박상희

위원 박홍규

위원 임성문

위원 방이엽

위원 강길연

위원 최정묵

위원 송현주

[별지]

국민의 대표와 국민으로부터
보다 나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세 고지·송달 과정에서의 국민불편 해소방안

2022. 3.



국민권익위원회

A C R C

목 차

I. 추진개요	1
II. 현 황	2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1) 위택스 전자송달 방법에 문자방식 추가	4
(2) 송달방법 변경 시 사전안내 실시	9
(3) 전자송달 가입방법·혜택 등 안내 강화	11
(4) 지방세 공시송달 관련 명확한 기준 마련	13
IV. 조치사항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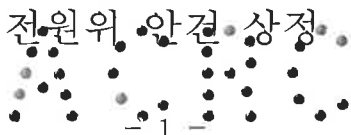
I.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정부는 전자정부 실현 및 국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성 제고를 위해 '07년부터 지방세 납부시스템으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WeTax, 위택스)** 구축·운영 중
 - ※ 서울시는 '01년 지방세납부시스템(E-Tax, 이택스)을 개발, 지방세 온라인 및 모바일 납부 시행 중(이후 부산시('04년), 인천시('05년), 대구시('09년)도 자체 E-Tax 운영 중)
 - ※ ('19년 기준 가입자수) 위택스는 누적 8,759천명, 서울시 이택스는 누적 2,594천명
 -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현재 위택스와 이택스로 이원화된 시스템 통합이 필요하여 행정안전부 주도로 '23년 10월까지 통합을 추진 중임
- 정보기술 도입 이후 국민 납부 편의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오히려 국민이 지방세 고지·송달을 알지 못하는 등 일부 불편 사례 발생
 - '17. 5월 이메일 안내만 하고 문자고지 서비스를 종료함에 따라 납세자가 전자고지·송달을 확인하지 못해 체납 사례 증가
- 한편, 지방세 공시송달 과정에서 일부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례 발생
- 정보화 시대 국민불편 해소 및 지방세 납부 증진을 위해 통합 지방세정보시스템 전자고지·송달 및 안내 관련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위

- '21. 12월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 '22. 1~2월 관계기관 협의
- '22. 3월 소위 및 전원위·안전·상정·



II. 관련현황

□ 지방세 현황

- (종 류)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이상 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이상 시·군세) 등 11종

※ (특별·광역시세)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 (자치구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 (납부방식) 신고에 의한 납부, 고지서 송달에 의한 납부 등으로 구분

< 지방세 세목별 종류 >

세 목		납부방식		납부시기
취득세		신고납부	기초지자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	수시
등록 면허세	등록분	신고납부	기초지자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	수시
	면허분	신고납부	기초지자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	수시
		보통징수	기초지자체에서 고지서 송달, 납부	1월
재산세	재산세	보통징수	기초지자체에서 고지서 송달, 납부	7월, 9월
	도시지역분	보통징수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합산)	7월, 9월
레저세		신고납부	기초지자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	매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초지자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	4월, 5월
주민세	균등분	보통징수	기초지자체에서 고지서 송달, 납부	8월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초지자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	7월
	종업원분	신고납부	기초지자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	매월
지방소비세		기타	국세청장·관세청장 송금, 광역지자체에 안분 납입	매월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기초지자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	매월
자동차세	보유분	보통징수	기초지자체에서 고지서 송달, 납부	6월, 12월
	주행분	기타	울산광역시장이 기초지자체에 안분 납입	매월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자원분	신고납부	기초지자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	수시
	특정부동산분	보통징수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	7월, 12월
지방교육세		기타	등록면허세, 레저세 등 본세 절차에 따름	본세에 따름

○ (징수현황) '20년 기준 약 106조 1,662억원 부과, 약 102조 488억원 징수

< 연도별 지방세 징수현황(행정안전부 자료, 결산기준)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부과액	75,793,162	80,465,229	85,226,402	88,873,283	94,822,897	106,166,223
징수액	70,977,794	75,531,651	80,409,137	84,318,258	90,460,408	102,048,782
불납결손액	649,955	824,206	807,158	887,043	826,525	791,132
미수액	4,165,413	4,109,372	4,010,107	3,667,982	3,535,964	3,326,309

※ (불납결손액) 시효완성 등으로 세입징수가 불가능하여 결손처리된 금액

※ (미수액) 당해연도 수납이 불가능하나 결손처분은 안된 금액

□ 지방세 납부시스템 현황

○ (개념) 지방세정보통신망*의 하나로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 (지방세정보통신망)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서류송달 및 지방세 납부 등을 전자적으로 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행안부 고시)」

○ (종류)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We-Tax, 위택스, 행안부), 지방세납부시스템(E-Tax, 이택스, 서울, 부산, 인천, 대구)

※ 차세대 위택스 개통 시기에 맞추어 이택스 시스템과 통합 예정(1차('23. 1월), 2차('23. 10월))

< 지방세 납부시스템 구분('19년 기준) >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행안부 등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시스템 종류	위택스	이택스			
도입연도	2007년	2001년	2004년	2005년	2009년
가입자수(누적)	8,758,849	2,594,447	540,390	445,465	104,747
납부금액	18,825,460 (신고·납부액)	24,169,476 (고지·납부 포함)	4,817,351 (고지·납부 포함)	3,929,380 (고지·납부 포함)	493,942 (고지·납부 포함)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위택스 전자송달 방법에 문자방식 추가

문 제 점

- 개인이 사전 신청할 경우 위택스 전자사서함, 상용 이메일, 민간앱을 통해 지방세 전자고지서 송달 가능

※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30조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 송달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나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달한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⑦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 전자사서함, 상용 이메일의 경우 국민이 직접 로그인해야 확인할 수 있어 전자송달 도착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곤란

※ 카카오톡, 네이버 등 민간앱의 경우 '18. 12월 「지방세기본법」 개정 이후 '19. 6월 도입되었으며, SNS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
(21. 12월 기준 민간앱 2,115,815명, 전자사서함 1,210,637명, 이메일 139,57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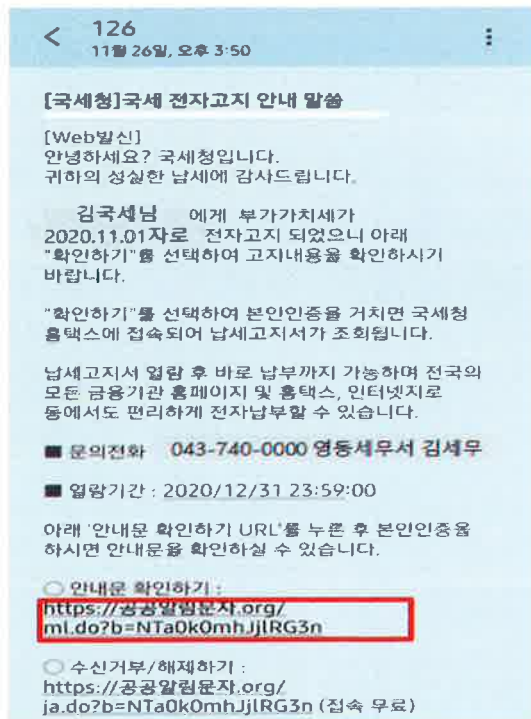
- 휴대전화 문자는 이메일 등과 달리 고지서 송달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나, 홈택스·이택스와 달리 위택스는 문자안내 서비스 미운영

< 전자송달 방식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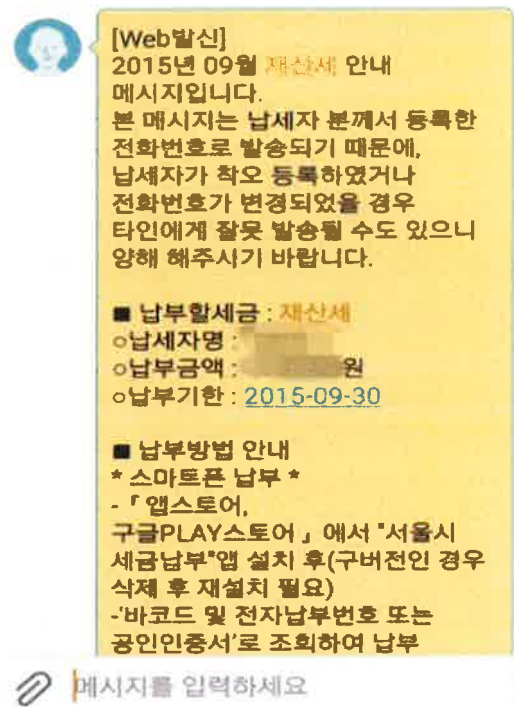
구분	위택스	이택스	홈택스
송달 방식	- 전자사서함 - 공용 이메일 - 민간앱(카카오, 네이버 등)	- 전자사서함 - 공용 이메일 - 민간앱(카카오, 네이버 등) <u>통신3사 문자</u>	- 전자사서함 - 공용 이메일 - 민간앱(카카오, 네이버 등) <u>통신3사 문자</u> (카카오 미가입자 대상)

- ※ 위택스는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서는 문자 안내를 하고 있으며, 이택스는 지방세 환급금 외에도 전자송달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 ※ 홈택스는 2G폰, 일부 알뜰폰 등 모바일 고지가 불가능할 경우 전자사서함을 확인하도록 별도 문자 안내
- ※ '17. 5월까지 전자송달 신청자에게 이메일, 전자사서함 외 문자로도 안내하였으나, 요금문제, 휴대전화 번호의 부정확성 등을 사유로 문자서비스 운영 중단

< 홈택스 문자고지 화면 >



< 서울시 이택스 문자고지 화면 >



○ 국세와 달리 지방세의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통한 세금정보 수신 동의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번호를 단순 신청자의 개인정보로 수집

※ 위택스는 전자사서함 외 **전자우편주소(이메일 주소)로만 전자송달 신청**이 가능하고, 국세(홈택스)는 전자송달 신청 외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고 정보제공 동의를 받고 있음

※ (참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①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 ~ 5. (생략)

※ (참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①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2. (생략)
3. 납세자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4. 전자송달을 받을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또는 전자고지함(이하 “전자우편주소등”이라 한다)
5. ~ 6. (생략)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9호 서식>

지방세 전자송달 [] 신청서 / [] 철회신청서

※ 해당의 여부를 알은 신청인의 무실하지 않으며, []하는 때에는 국세·국세외납세자의 경우를 말한다.

전자우편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특정사항
신청인(납세자)	수신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인(납세자)의 경우(다도지)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입지)			
전화번호	전자송달을 받을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			
신청서류	납세고지서 []	자율납세 []	
	가납부 주권서 []	연속납세 등록신청서 []	
가짜	납부통지서 []	지출계정금액 지급통지서 []	가짜 []

신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3호의2 서식>

홈택스 이용신청서 [] 신규 [] 변경 [] 철회

전자우편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특정사항
신청인(납세자)	수신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인(납세자)의 경우(다도지)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입지)			
전화번호	전자송달을 받을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			
신청서류	납세고지서 []	자율납세 []	
	가납부 주권서 []	연속납세 등록신청서 []	
가짜	납부통지서 []	지출계정금액 지급통지서 []	가짜 []

신청인

세무서장 귀하

개선방안

- 홈택스, 위택스와 동일하게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전자송달 관련 안내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집 목적을 납세자의 단순 개인정보 수집이 아닌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위해 수집하는 것임을 명시

⇒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지방세전자송달 신청서) 개정 또는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규정에 반영

※ '19년부터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중이며, '22년말 완료 예정

< 개선방안 예시(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

현 행	개 선(안)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①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 3. <u>납세자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u> 4. ~ 6. (생략) ② ~ ④ (생략)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① -----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u>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u>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관련 세부 운영방법

※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2 서식(홈택스 이용신청서) 참고(휴대전화번호 작성 시 지방세 정보 수신 동의 여부 작성 추가 등)

< (참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 >

홈택스 이용신청서 ([]신규 []변경 []철회)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인적 사항	㉠ 성명(대표자)	㉡ 성 호(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용자 구분	[] 개인 [] 법인 [] 세무대리인 (개인, 법인)	
	㉥ 사업장 소재지	(선택번호 :)	
	㉦ 주 소	(선택번호 :)	
2. 신청 내용	㉧ 사용자 아이디 (ID)		
	(※ 영어 또는 영어 - 숫자의 조합, 6-20자)		
	㉨ 비밀번호		
	(※ 영어 - 숫자 - 특수문자의 조합, 9-15자)		
전자우편주소	㉩ 전자우편주소		㉪ 휴대전화번호
	■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 동의 []		■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 동의 []
「국세기본법」 제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3. 전자고지를 원하시는 경우 다음 란을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고지 신청	※ 본인의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홈택스 이용 신청을 완료하거나 전자고지 후 2회 이상 미결제시 전자고지 신청이 자동으로 철회됩니다. ■ 공인인증서 보유 여부 보유 [] 미보유 []		
	[] 신청	[] 철회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납세고지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에 저장된 때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고지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서면고지는 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 송달방법 변경시 사전안내 실시

문 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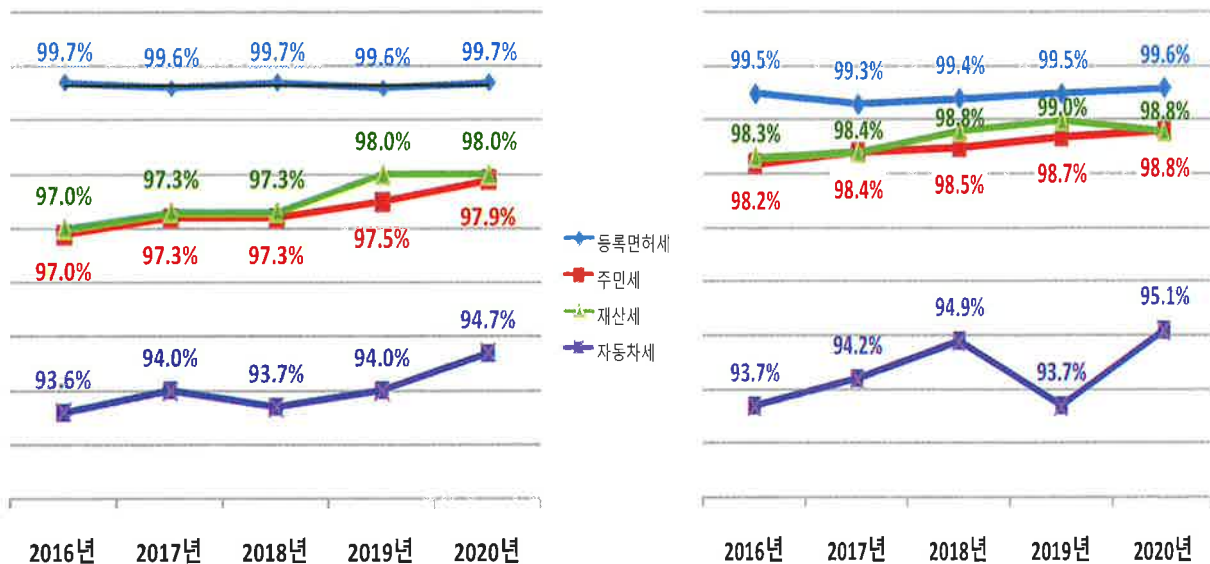
○ 위택스의 경우 사전안내 없이 '17. 5월 일방적으로 문자 서비스를 중단하고, 우편물 발송 없이 이메일과 전자사서함으로 세금고지

※ 중단사유는 문자 요금(장문 약 26원) 발생, 위택스내 휴대전화 번호가 부정확하여 수시로 업데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나, 이택스 등의 문자발송 사례와 우편 요금(일반우편 400원, 등기우편 2,500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위택스를 사용하는 지자체의 경우 2018년 납부고지 세목의 징수율이 전년과 같거나 감소하였으며, 동기간 서울시의 징수율은 전년대비 모두 증가하였음

※ '18년 기준 재산세 등 4개 세목에 대한 미납액(불납결손액 포함)이 위택스는 약 7,082억원으로 전년 약 6,793억원 대비 약 289억원 증가하였으나, 서울시는 '18년 미납액이 약 1,252억원으로 전년 약 1,306억원 대비 약 53억원이 감소하였음

< 지방세 연도별 징수율 비교(행안부 지방세통계연감 등 관련자료 재구성) >



< 위택스 >

< 서울시 이택스 >

※ 우편고지 금액을 포함한 전체 지방세 수입액(결산기준)이며, 위택스는 전체 지방세 수입에서 서울시 수입을 제외한 금액임.

- 한편, '17년 하반기 이후 사전안내 없이 일방적인 문자고지 중단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거나 지방세 체납에 대한 불만제기 민원 사례 증가

【 민원사례 : 문자고지 미실시에 따른 불편, 불만(국민신문고 민원) 】

- 9월분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오지 않아 확인하니 전자신청을 해서 위택스로만 발송이 되었고 문자나 전화로는 통보가 안되었다고 함. 고지서를 줄이기 위한 것은 알겠는데 최소한 전화나 문자 통보는 해 줄 필요가 있음. 불합리한 시스템 때문이니 체납 가산금을 면제해 주기 바람('18. 10월)
- 지방세 청구서를 늦게 확인했는데 3% 가산세가 붙었는데 대부업 이자도 15일 만에 3%를 추가하지 않는데 가산세가 과도함. 위택스 가입하고 문자알림 서비스도 신청했는데 알려주는게 없음. 납기일이나 그전에 안내할 필요가 있는데 어쩐지 위택스에서 연체를 유도하는 것 같아 불쾌함('19. 8월)
- 우연히 위택스에 들었는데 자동차세 체납이 있는데 별도 고지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산금까지 내야하는 것은 불합리함. 문자서비스도 받은 적이 없었는데 고지 안내를 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시기 바람('20. 7월)

【 민원사례 : 문자고지 중단 사전안내 미흡(국민신문고 민원) 】

- 9월 재산세 납부시점이 지났는데도 알림이 없어 위택스에 들어가 확인해 봤더니 8월 주민세가 체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 문자안내가 없어서 확인해 보니 5월에 종료되었다고 하고, 이메일 안내는 스팸처리되었을 수도 있다고 함. 그럼 전자고지 신청 전에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하던지 아니면 언제부터 문자서비스를 중단한다고 사전에 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17. 9월)

개선방안

- 송달방법 변경 또는 송달 관련 안내방식 변경 시 국민들이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이전 방법으로 관련사실을 미리 안내

⇒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규정에 반영

< 개선방안 예시 >

- 전자송달을 철회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자송달 방법이나 이에 대한 안내 방법을 변경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송달 신청한 자에게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내용을 알려줄 것

문 제 점

- '18년 기준 지방세 납세고지서 전체 송달건수 약 1억 7,086만여건 중 우편송달이 95%(약 1억 6,234만여건)으로 전자송달비율(5%, 약 852만여건)은 아직까지 상당히 적은 편

※ 전자송달 약 852만여건 중에서 전자사서함이 66.1%(약 563만여건), 이메일은 31.0%(약 265만여건), 민간앱은 2.9%(약 24만여건)임

※ 우편송달 중에서는 일반우편이 94.1%(약 1억 6,234만여건)로 가장 많은 편임

< '18년 기준 지방세 송달현황(행안부 자료 재구성) >

(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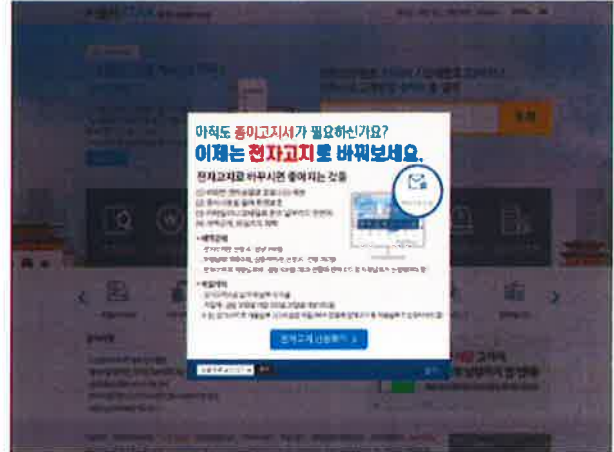
구분	계		일반우편		등기우편		전자고지							
	발송건수	비율	발송건수	비율	발송건수	비율	소계		전자사서함		이메일		민간앱	
							발송건수	비율	발송건수	비율	발송건수	비율	발송건수	비율
합계	170,865,854	100.0	152,717,905	89.4	9,626,652	5.6	8,521,297	5.0	5,632,537	3.3	2,645,161	1.5	243,599	0.1
서울	37,091,565	100.0	29,213,309	78.8	2,665,140	7.2	5,213,116	14.1	2,586,026	7.0	2,586,026	7.0	41,064	0.1
부산	10,295,970	100.0	9,757,241	94.8	358,933	3.5	179,796	1.7	162,473	1.6	4,033	0.04	13,290	0.1
대구	6,982,868	100.0	6,607,644	94.6	241,847	3.5	133,377	1.9	119,368	1.7	3,761	0.1	10,248	0.1
인천	8,474,998	100.0	7,940,602	93.7	330,480	3.9	203,916	2.4	182,876	2.2	5,650	0.1	15,390	0.2
광주	5,271,056	100.0	5,001,233	94.9	159,196	3.0	110,627	2.1	105,493	2.0	877	0.02	4,257	0.1
대전	4,807,011	100.0	4,530,533	94.2	160,355	3.3	116,123	2.4	106,637	2.2	1,577	0.03	7,909	0.2
울산	2,771,023	100.0	2,542,872	91.8	149,795	5.4	78,356	2.8	72,742	2.6	845	0.03	4,769	0.2
세종	1,071,132	100.0	944,004	88.1	90,914	8.5	36,214	3.4	33,156	3.1	774	0.1	2,284	0.2
경기	41,671,970	100.0	37,431,963	89.8	3,070,113	7.4	1,169,894	2.8	1,065,502	2.6	26,251	0.1	78,141	0.2
강원	4,765,550	100.0	4,463,255	93.7	166,551	3.5	135,744	2.8	126,430	2.7	1,753	0.04	7,561	0.2
충북	5,030,287	100.0	4,728,911	94.0	178,965	3.6	122,411	2.4	114,117	2.3	1,435	0.03	6,859	0.1
충남	7,801,776	100.0	7,098,504	91.0	526,545	6.7	176,727	2.3	163,798	2.1	2,576	0.03	10,353	0.1
전북	5,468,454	100.0	5,172,591	94.6	144,744	2.6	151,119	2.8	142,562	2.6	1,399	0.03	7,158	0.1
전남	8,319,828	100.0	7,710,503	92.7	405,455	4.9	203,870	2.5	195,592	2.4	1,617	0.02	6,661	0.1
경북	8,220,791	100.0	7,763,881	94.4	268,375	3.3	188,535	2.3	175,419	2.1	2,376	0.02	10,740	0.1
경남	10,878,655	100.0	10,090,787	92.8	543,958	5.0	243,910	2.2	227,530	2.1	3,086	0.03	13,294	0.1
제주	1,942,920	100.0	1,720,072	88.5	165,286	8.5	57,562	3.0	52,816	2.7	1,125	0.1	3,621	0.2

- 별도 팝업 안내를 하고 있는 국세청 홈택스, 이택스와 달리 홈페이지 메인화면 내 전자송달 관련 안내가 없어 국민들이 신청방법, 신청시 혜택 등을 인지하고 가입하기가 어려운 실정

< 위택스 홈페이지 >



<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 >



개선방안

- 이택스 사례와 같이 위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전자송달 관련 신청방법, 혜택 등을 상시 노출하는 등 안내·홍보 강화

⇒ 위택스 세부 운영 계획 등에 반영

문 제 점

- 공시송달을 할 경우 서류의 주요 내용을 지방세정보통신망(지자체 홈페이지 포함), 관보·공보 등에 게시·게재하여야 하나, 성명(법인명), 송달지, 서류명칭, 서류내용 외 공개내용·범위 관련 기준 부재

※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 3.(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지방세정보통신망,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을 함께 활용하여야 한다.

※ (참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송달대상, 송달지, 서류명칭·내용을 기재하도록 규정
- 같은 사람에 대해 여러 건을 공고하거나 여러 명에 대해 공고할 경우 첨부 서류로 작성하여 공고 가능
- 서류가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일 경우 부과 연월일, 주요세목, 총세액을 기재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 서류의 송달지:
- 서류의 명칭:
- 서류의 내용:

위의 서류를 년 월 일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_____ 하므로 (납부기한을 년 월 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명, 상세주소 등 공개정보 일부를 특수 문자로 처리하기도 하나, 이 경우 공고내용을 명확히 전달할 수 없는 문제 발생

※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규정상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면서 성명, 생년월일, 개략적 주소 등을 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 혼란 가중

※ (참고)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행안부 예규) 제5조(개인정보 보호)

-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는 방법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해당 당사자 등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 등의 성명, 생년월일, 개략적 주소, 개략적 차량번호(차량번호는 차량관련 처분 등 필요한 경우에만 기재) 등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 민원사례 : 공시송달 시 개인정보 노출 여부(국민신문고) 】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시송달에서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가 모두 기재되고 있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18. 7월)
- 공시송달의 경우 행정기관이 성명, 주민등록상 상세주소, 생년월일 등을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함('20. 2월)
- 행안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상 공시송달 시 성명, 생년월일, 개략적 주소, 개략적 차량번호 등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기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명과 생년월일은 다 공개해도 된다는 것인지 궁금함('19. 9월)
- 지방세 공시송달 시 공개범위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어 관례적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일부를 가리거나 삭제할 경우 공시송달의 의미가 없게 되므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22. 1월 지자체 실무자 의견)

개선방안

-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공시송달의 목적인 주요내용을 납세자에게 알리기 위해 **정보 중 일정부분을 특수문자로 처리하는 규정 마련**

※ (특수문자 처리 예시) 성명 중 문자 1개, 주소 중에서 상세 주소를 특수문자로 처리하고, 생년월일 등 기타 불필요한 정보 게재는 금지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성 명	홍길동	홍길*
법인명	(주)갑을병정	(주)갑을**
송달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 14 초원아파트 101-101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 14 초원아파트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 16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 **

- 공시송달 과정에서 납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정보통신망 내 공시송달 대상자 여부 확인 기능 및 이에 대한 안내 근거 마련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 개선방안 예시 >

현 행	개 선(안)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 서류의 송달지: ○ 서류의 명칭: ○ 서류의 내용: ---(생략) 비고 1. ~ 4. (생략) 5. (신설) 6. (신설)	지방세 공시송달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비고 1. ~ 4. (현행과 같음)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중 문자 1개(4글자 이상인 경우 2개)와 서류의 송달지 중 상세주소를 특수문자 (*)로 처리하며 생년월일 등 추가 정보는 게시하지 않는다. 6. 송달 대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

IV. 조치사항

☐ 대상기관 : 행정안전부

☐ 조치내용 및 조치기한

세부과제명	조치사항	조치기한
1. 위택스 전자송달 방법에 문자방식 추가	-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전자송달 관련 안내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또는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규정에 반영	'23. 8월
2. 송달방법 변경 시 사전안내 실시	- 송달방법 변경 또는 안내방식 변경 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관련사실을 사전에 안내 ⇒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규정에 반영	
3. 전자송달 가입방법·혜택 등 안내 강화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전자송달 관련 신청방법, 혜택 등 상시 노출 ⇒ 위택스 세부 운영 계획 등에 반영	(즉시)
4. 지방세 공시송달 명확한 기준 마련	- 개인정보 중 일정부분을 특수문자로 처리하는 등 관련 기준 마련 - 위택스 내 공시송달 대상자 여부 확인기능 마련 등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3. 2월

정 본 입 니 다 .

2022. 3. 15.

국 민 권 의 위 원 회



ACRC